



Michelle Kim  
Professional Corporation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

# 2025 Personal Client Intake Form

No.	Authorization	Preparer

\* 기입 안내(3-5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신 후 작성해 주세요.

1. Name: (영문)First Name: Last Name: (한글)		2. SIN Number:	
3. Status: Citizen / PR Card Holder / Visa Holder <b>Date of Entry in 2025:</b> (25 년도에 처음 입국하신분만 기입해주세요) <b>Date of Departure in 2025:</b> (25 년도에 캐나다를 완전히 떠나신분만 기입해주세요) <b>World Income:</b>		4. Date of birth: MM / DD / YYYY	
6. Phone Number:		5. Gender: Male / Female	
8. Mailing address and Postal Code:  Do you want to change your addres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If you move into another province during 2025, fill the date of moving:</b>		7. E-mail:	
9. Marital Status  Single / Married / Common law / Divorced / Separated / Widowed  If your marital status changed during 2025, <b>Date of change:</b>		10. How would you like to receive NOA?  Canada Post Mail / Email	
11. Is this your very first retur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2. Did you own foreign property with a total cost of more than \$100,000 in 2025?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3. Import from CRA – 해당 내역에 반드시 표기해주시고 받으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Notice of Assessment <input type="checkbox"/> T4(장수: ) <input type="checkbox"/> T4E <input type="checkbox"/> T4A <input type="checkbox"/> T4A(P) <input type="checkbox"/> T4A(OAS) <input type="checkbox"/> T5 <input type="checkbox"/> T3 <input type="checkbox"/> RRSP <input type="checkbox"/> FHSA <input type="checkbox"/> Tuition(T2202) <input type="checkbox"/> RC210 (Advanced CWB) <input type="checkbox"/> T5007 <input type="checkbox"/> T5008			
14. Documents to file – 해당 내역에 반드시 표기해주시고 받으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Medical Expenses / Premium paid to group health benefit <input type="checkbox"/> Donation  <input type="checkbox"/> Child Care Expenses <input type="checkbox"/> Student Loan Interest <input type="checkbox"/> Tips(\$ )  <input type="checkbox"/> First home buyer (Closing date: ) <input type="checkbox"/> Moving Expenses <input type="checkbox"/> Union Payments  <input type="checkbox"/> Foreign Income Statement (국세청자료) <input type="checkbox"/> Foreign Income <input type="checkbox"/> Tool Purchases (미용사,기술직종사자)  <input type="checkbox"/> Rental Income <input type="checkbox"/> Business Income <input type="checkbox"/> GST Filing <input type="checkbox"/> Principal Residence Disposition  <input type="checkbox"/> Home office expenses (attach T2200)-see page 5 (T2200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클레임가능)			

Dependent 1 (만 18세 이하만 등록)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Dependent 2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Dependent 3

Name:	Date of Birth:
Sin Number:	Male / Female
Net Income:	

You agree to provide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your personal tax return. You ar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reported.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together in a single email. Submitting documents in multiple emails may result in missing information.

Our firm only prepares your personal tax return and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the filing. If CRA requests additional documents or audits related to personal income tax, GST, or Child Benefit, additional fees may apply if you request our assistance.

You also understand and agree that Michelle Kim Professional Corporation is not responsible for any additional requests, claims, or issues with CRA or any third parties on your behalf.

By signing and dating this page, you authorize M. Kim Professional Corporation to act as your representative.

귀하는 개인 세금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모두 취합하여 하나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누어 제출할 경우, 정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 세금 신고 업무만 대행하며, 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CRA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이나 감사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 의뢰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CRA 혹은 다른 기관에서 세금신고와 관련된 추가 요청이나 문제에 대해 Michelle Kim Professional Corporation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 페이지에 서명하시면 Michelle Kim Professional Corporation이 귀하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Date \_\_\_\_\_

Printed Name \_\_\_\_\_

Signature \_\_\_\_\_

## 기입 안내

1. 신넘버 발행시 등록된 성함을 적어주세요.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지 구분해서 정확히 적어주세요.
2. 신넘버를 적어주세요.
3. 시민권자/영주권자/비자 보유자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2025년에 처음 캐나다에 입국하셨거나 캐나다를 완전히 떠나신 분은, 해당 입국일자 또는 출국일자를 표시하고 날짜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입국일까지 또는 출국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세전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World Income"란에 기입해 주세요.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0'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생년월일 적어주세요.
5. 성별을 적어주세요.
6.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7.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8. 주소를 적어주세요. 2025년중 이사하셔서 주소가 바뀌었으면 YES 에 체크해주세요. **2025년중 주 이동을 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주로 이주하신 일자를** 적어주세요.

9. 싱글/결혼/사실혼/이혼/별거/배우자 별세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중이신 경우, 배우자의 연간 세전소득이 확인되는 국세청 발급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서류 미비로 인해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해외 거주 배우자의 소득도 GST 및 차일드 베네핏 계산 시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도, 신청자께서 married이신 경우 가족소득(Family Income) 산정을 위해 배우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정보 제공 부탁드립니다.

영문성함:	
생년월일:	
2025년 연간 소득금액:	

10. 파일 결과를 우편으로 받으실지, 이메일로 받으실지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 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 NOA(Notice of Assessment)의 세부 내용이 아닌 새로운 NOA가 발급되었다는 알림만 이메일로 받게 되며, 세부 내용은 직접 My CRA Account에 접속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세금신고이신 경우에는 우편 수령만 가능합니다.
11. **캐나다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시는 경우, YES 에 표시해 주세요.**
12. 한국에 1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시면 YES 에 표시해 주세요. 외국 재산 신고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13. 원활한 처리와 서류 누락방지를 위하여 모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4. 2024년 3월 24일부로 회계대리인은 고객님의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 정보를 더 이상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로 리펀드 및 수당을 수령하시려면, CRA에 로그인하여 은행 정보를 직접 등록 또는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세금신고이신 경우에는 우편으로만 체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처음 집 구매하신분, 이사비용 발생하신분, 의료비용 발생하신분, 톨 구매하신분은 따로 문의해 주세요.**  
자택근무를 한 일반 employee 가 고용주로부터 T2200 서류를 받으신 경우 5페이지에 첨부된 표에 비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된 비용은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6년간 직접 잘 보관해주시고, T2200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세요.
15. 한국에서 수입발생이 있으셨던경우 수입증빙과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 공제를 위해 국세청 서류를 보내주세요.
16. 만 18세 미만 자녀 정보를 Dependent란에 적어주세요.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자녀분은 Dependent 가 아니고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17.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2page에 날짜,성함,서명을 해주세요.**

## Deduction 항목에 대한 안내

1. Medical expense는 해당 신고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기간의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 및 만 18세 자녀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합산하여 소득이 낮은 분 신고서에 비용 청구해드리며, 소득의 3% 이상이 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참고) **알버타주는 마사지비용 청구 안됩니다.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s-33099-33199-eligible-medical-expenses-you-claim-on-your-tax-return.html#wb-auto-4>
2. **Child care expense**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만 16세 이하의 자녀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공제 가능한 비용  
1) caregiver/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2)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ers  
3) 캠프의 주요 목표가 어린이를 돌보는데 있는 주간 캠프 및 주간 스포츠 학교  
4) 기숙학교, overnight sports schools,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캠프  
cf) 정규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학습 프로그램(sports study program)의 수업료, 여가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비용, 스카우트 연간 등록, 교육기관의 교육비용과 관련된 수수료, 스쿨버스비용 등은 공제 불가능.
3. Union payment는 (T4에 union due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union due를 납부하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4. Tool purchase는 Employed tradespersons의 경우에는 **Tool 구매 금액이 \$1,47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 최대 \$1,0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ligible apprentice mechanic(견습 정비사)의 경우 고용되어 employment income을 벌기 위해 구매한 tool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5. First home buyer는 고객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집을 처음 구매하였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크레딧으로 \$1,500의 추가리턴을 받으실 수 있으며 Closing date 를 신청서에 명시해주세요.
6. Moving expense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새로운 직장 혹은 학교의 이유로 이사한 경우,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단순 거주지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이동 거리가 40Km이상 되어야 비용 공제 가능하며**, 한국에서 캐나다로 처음 이주하신 경우에 발생한 이사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말씀해주시면 비용공제를 위해 작성하셔야 하는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7. 주거주지로 사용하시던 주택 판매가 있었을 경우 양도세 면세를 신청하셔야 하며 추가서류 요청이 있으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양도세 면세신청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8. **렌트비용공제는 온타리오와 BC 주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여부가 다르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9. 자녀가 있는 SK 주 거주자는 자녀 액티비티 비용 (운동, 짐, 예체능 활동)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취합해 하나의 이메일에 첨부해 주세요.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실 경우 정보 취합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CS Scanner 나 Cam Scanner 등 핸드폰 스캐너기능이나 앱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alculation of work space in the home expenses

## 홈오피스 비용 계산서

Check list\_아래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2025 년도중 Employer 에게 재택근무를 요청받으셨나요?

근무하시는 회사로부터 T2200 을 받으셨나요?

(T2200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클레임가능)

비용청구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Area of home used for workspace	(홈오피스로 사용하신 공간)	SQ
Total Area of home	(집 전체 공간)	SQ
Office supplies	(자비로구매하신 오피스용품)	
Electricity, heat, water, internet	(전기,히팅,물, 인터넷)	
Maintenance	(유지보수_시큐리티,청소,집수리)	
Rent	(렌트비)	